

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 1차 건설위원회 (1994. 9. 9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내용과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내용이 상치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의사정족수

- 심의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

○ 조직(위원)

- 당연직인 도의 국장 7인을 4인으로

-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으로

○ 기능

- 국토이용계획 입안, 자문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·변경에 대한 사항 (시장,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)으로

○ 명칭변경

-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도의 동 조례와 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의 상치되는 불합리 조문을 정비
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.

나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발췌 1부.